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세부사업명	축산물직거	래활성	화지원			서	l목	자치딘 자본노	-		
내역사업명	축산물직거	래판매	장설치지원	4			 산 만원)	(보조·융자	3,000 각 1,500)		
사업목적		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식육판매점:	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「축산법」기	데3조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-한우, 육우 합법에 따라			로 설립한 영 합 및 품목3		합법	인, 농업회	회사법인, 농	·협협동조		
	-법인 또는 2	진합과 직	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	구축	한 도록	학장, 협동	조합, 식 육 포정	당처리업체		
지원한도	개소당 6억	원(보조	3, 융자 3	9) 이내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30	지방비	-	융	자	30	자부담	40		
								(단위 :	백만원)		
A = W	<u>구</u> 분	20)17년	2018년		Ź	2019년	2020)년 ———		
연도별 재정투입	합계 ——		0,000	5,000			5,000	3,00			
계획	_국 고		,000	1,500			1,500	90			
	<u>융자</u> 자부담		,000	1,500 2,000			1,500 2,000	90			
			,000	2,000			2,000	1,2			
담당	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							ᅷ처			
	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044-201-2332 지단체 축산관련과							-2332			
신청시기	정기(전년도 10.31일까지),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									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	보시스	템(AGRIX)	사업시행지	침서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
-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한 도축장, 협동조합(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·인가된 조합(지역특화)에 한함), 식육포장처리업체
 - *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,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
 - 단,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(별지 제3호서식)를 거처 확인
- 도축장, 협동조합은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하여야 함
 - * 우선순위: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>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> 농촌관광, 6차 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>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
 -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훈령)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
 - * 농업인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3. 지워대상

○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(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건축, 기존건물의 매입(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), 건물임차료(융자금에 한함)
- 냉장, 냉동 판매(진열장), 포장, 인테리어시설,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, 소 부산물 추출(사골엑기스 등)시설,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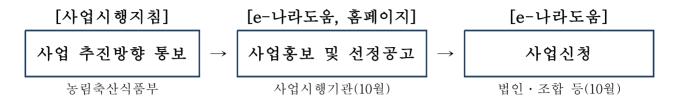
- 재 원 : 축산발전기금
- 지원기준 : 보조 30%, 융자 30%(금리 2~3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자부담 40%
 - * 변동금리 선택가능(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, 매 6개월마다 변동됨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1) 지원한도: 개소당 6억원(보조 3, 융자 3) 이내 (건물 신축시 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)
- 2) 지원규모
- 연 20개소(예산규모에 따름)
 -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
- 3)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
 -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
 - 식육판매 점포면적 33.0m²(10평형) 이상
 - 식육판매 진열장·냉장숙성실·냉동실·냉장육절기, 소 부산물 추출(사골 엑기스 등)시설 설치
 - 기타 시설: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[별표 10]의 "7. 축산물판매업"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
 -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.2㎡(40평형)이상(식육판매장소 포함)으로 하고, 음식점은 「식품위생법」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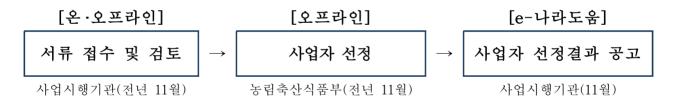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사업시행기관(시·도, 시·군·구)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
 -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(10.31일 까지)
 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
 - * 제출서류
 -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, 사업계획서 등)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신용조사서(별지 제2호서식) 및 관련 증빙서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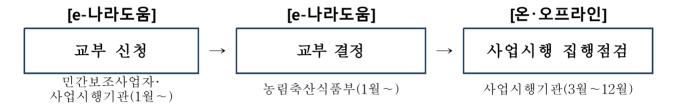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·검토
 - 농업인, 농업법인 등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할 경우 「농어업경영체법」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
 - 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, 법인 내부의견 합치여부,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
-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내용 확인(현지실사 보고서) 및 심의
 - 시·군·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, 우선순위표와 의견 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(11.15일 까지)

- 관련 증빙서류는 시·군·구에서 보관(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)
- 농림축산식품부는 시·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·통보(11.15일 까지)
 - *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 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,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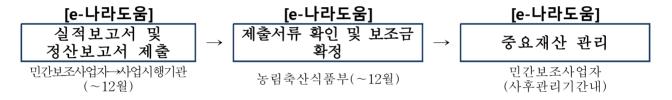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·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- * (교부결정)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
 - 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
 - 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- 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-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
 -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
-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

- 사업시행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,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
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 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10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- *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(계약. 조달지연 등)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
 -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
 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,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- 중요재산의 현황은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.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,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 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
 - 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- 「기본규정」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「기본규정」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
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

	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	법인등	록번호							
신	성 명 (대표자명)			농업 <i>경</i> 등록					생년	월일		
청	주 소							전화반	호			
 자	축산업 종사경력		년	영농	교육				분야,		월	주
	생산자단체 등의 형태	조합, 법인,	회사,	작목반,	기타		참¢	겨농가수				ই
	법인	내부 의견 합	치여	부								
	사 업 명	축산물직거] 래활	성화지	원							
신	사업예정지 (동·리 번지까지											
청	기재)											
וו	사 업 비	합계			시원(축선				ス	방비	7	자부담
내	(천 원)	日二		계	보 3	조		융 자				, , ,
용												
0	사업내용별 규모(량)											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신청자
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 귀하

첨부서류 : 1. 사업계획서 1부.

- 2. 대출신청자료 1부(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3.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경영장부, 경영일지 등)사본 1부(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(주) 1.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
 - 2.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
 - 3.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
 - 4.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(농업인 및 농업법인),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-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-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- 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-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

1. 현 황

시 설		건물(m²)	대지	(m²)						계
	소유									
규 모	임차									
(m^2)	계									
사 육		한우	육-	우						계
현 황	소유									
	위탁									
(마리)	계									
시 설	공동	판매시설	널	정운	 낚식당	운반시설	F	주차	<u></u> 장	기타
현 황	시설	1	m²		m^2				m^2	
기타	* 사업예	정지 :								
사 항										

2. 사업계획

• 세부사업내용

(단위: 백만원)

	규모			사 업	비		
세부사업명		합계	정부지	원(축산발7	전기금)	지방비	자담
	(m²)	월 계 	계	보조	융자	713 1	\\ \frac{1}{1}
계							
건 물							
판매시설							
정육식당							
기타시설							

- 자부담금 확보계획
- 부지확보 계획(건축공사가 있는 경우)
- 세부사업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1/4분기	2/4	3/4	4/4
판매시설				
정육식당				
기타시설				

신용조사서

1.	신청자	인적/	나항	및	신청	내	욧
- •	12 0 1	Lil	10	\sim	Liu	- ' '	\circ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	전화번호		
생산자단체등·		,	사업자등	록번호		대표자		
회사,기타명칭			(생년월	일일)		(성명)		
신청사업명	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! 보조		대 출		자담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	현재 연체사실		부도 또는 다	신용상태	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Ŷ.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			천원		
신용보증					
後取담보					
先取담보					

※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"대출신청자료에" 의함

4. 종합의견

 \circ

년 월 일

() 협동조합장 (인) () 시군지부장 (인)

사업성검토서

1. 신청자

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생산 형	자단체 등	의 태			참여농기	}수	
성 명 (대표자명)		,	생년월일 (남/여)				전 :	화	
주 소									
	사업명	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			사	업 비	(백만원)	
신청내용	사업규모	(m²)	합계	정	부지원 계	년(축산발 보조	전기금) 대출	지방비	자담
	사 업 예정지								

2. 사업검토

	구 분	확 인	검 토 의 견
사업계획	·사업계획의 적정여부		
	·운영능력 적정여부		
지어느런	•사육 규모		
사업능력	•사육 농가수		
	•년간 출하규모		
운영여건	•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		
운영방안	•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		
7] FL	∘법인 내부의견 합치 여부		
기타	·사업수행 의지 등		

*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·출하규모, 농가수 확인

3. 종합의견

 \bigcirc

년 월 일